

춘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나3033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나30331 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8가단5754 판결

전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호서

변론종결 2021. 9. 16.

판결선고 2021. 10. 28.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20. 12. 8. 선고 2018가단5754 판결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선택적으로, 1) 피고와 C영농조합법인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1. 25.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8. 1. 26. 접수 제4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피고는 C영농조합법인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춘천지방법원 양구등기소 2018. 1. 26. 접수 제470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쓰거나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추가로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쓰거나 추가판단하는 부분

가. 고쳐쓰는 부분

제1심판결 2쪽 13, 14, 16, 17째 줄의 각 ‘피고’를 ‘이 사건 법인’으로 고친다.

나. 추가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법인의 무자력을 판단함에 있어서 공동채무자인 D의 적극재산도 고려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수인의 부진정연대채무자가 있는 경우 부진정연대채무자들은 각자 채무 전부에 대하여 변제의 책임을 지는 것이므로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어느 한 사람의 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책임재산만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이고, 다른 부진정연대채무자의 책임재산까지 모두 고려하여 판단할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제1심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조미연, 판사 이은상, 판사 송종선 병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판 사
별지